

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

(김태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654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2. 11. 18.

발의의원 : 김태우, 김재용,

김지만, 류종우,

박종필, 육정미,

이성오, 하중환

의원 (8명)

1. 제안 이유

최근 환경변화 및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청년의 탈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탈모 치료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이 탈모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틈새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시행계획의 수립 등(안 제3조)
- 다.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·방법(안 제4조, 제5조)
- 라. 중복지원의 금지(안 제6조)
- 마. 환수 조치 등(안 제7조)
- 바. 업무의 위탁(안 제8조)
- 사. 비밀누설의 금지(안 제9조)

3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년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,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.
- “탈모”라 함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.
- “탈모 치료 바우처”라 함은 탈모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으로 치료 횟수 또는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 증표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
제3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
-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
-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방안
- 그 밖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,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으로 한다.

- 제5조(지원내용 및 방법)** ① 시장은 청년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 바우처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한다.
-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탈모 치료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(중복지원의 금지)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7조(환수 조치 등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탈모 치료 바우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
2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

제8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비밀누설의 금지) 이 조례에 따른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